

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(남연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16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17. 9. .
발 의 자: 남연희 의원
찬 성 자: 이상철의원, 김종곤의원
은복실의원, 김달호의원
박경준의원, 엄경석의원
신동욱의원, 문복란의원
윤종욱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모자보건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·출산·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(안 제5조)
- 라. 출산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기본사업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(안 제8조 ~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모자기본법」
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아동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편성
- 다. 입법예고: 2017. 10. 10. ~ 10. 15.(6일간)
- 라. 기 타: 특이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모자보건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출산친화도시”라 함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·출산·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.
2. “출산친화도시정책”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·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.
3. “출산친화도시사업”이란 이 조례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모자보건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·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임신·출산·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성동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 관련 단체·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·출산·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경우에는 임신·출산·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및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5조(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)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(이하 “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,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,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
2.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,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
3.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
4.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

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조성기준)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
2.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
3.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
4. 보육지원 및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
5.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
6.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기본사업)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
2. 모자보건·건강증진사업
3.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
4. 일·가정양립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협의회)의 설치)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.

1.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
2. 조성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3. 정책 및 사업의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
4. 연구개발,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

제9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출산친화도시 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2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11조(협의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1회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
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·장소·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·관리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관 계 법 규 >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□ 모자보건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영유아보육법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

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아동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

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1. 1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9. 29. / 남연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: 2017. 10. 20.
- 다. 상정일자: 2017. 10. 30.
(제234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개요

- 가. 제안설명: 남연희 의원
- 나. 제안이유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모자보건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·출산·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기본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(안 제5조)
- 라. 출산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기본사업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(안 제8조 ~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모자기본법」
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아동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- 다. 입법예고: 2017. 10. 10. ~ 10. 15.(6일간)
- 라. 기 타: 특이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모자보건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4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

안 제1조 ~ 제2조에서는

-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,

안 제3조 ~ 제4조에서는

-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
안 제5조 ~ 제7조에서는

-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, 조성기준, 기본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,

안 제8조 ~ 제13조에서는

-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우리나라 2016년 합계출산율은 1.17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며, 특히 올해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‘인구절벽’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음.
- 삼성경제연구소의 「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」에 따르면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,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 장기적으로 한민족 자체가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.
-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, 젊은 세대의 과도한 노인 부양 의무 등으로 인해 2033년에 국가재정의 파산 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.
- 이러한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저출산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, 많은 예산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중앙 정부 및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.

7. 토론요지: 없음.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